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 기능·역할 및 보안·방첩 업무수행의 보장 등을 위해 안 제4조에 직무 범위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, 방첩사의 보안·방첩 등 업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피지원 부대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자료 협조·지원 요청 및 정보제공 조항을 신설하고, 군인·군무원 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대신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

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라목 중 “문서 및 정보통신”을 “문서, 정보통신, 사이버, 암호, 전자파, 위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라목 및 가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북한·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

제4조제1항제2호라목(중전의 가목) 중 “「방첩업무 규정」”을 “그 밖에 「방첩업무 규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(중전의 나목) 중 “군”을 “군(해외에 체류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.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“대간첩 작전”을 “통합방위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목에 1)부터 4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

- 1) 「정부조직법」 제33조에 따른 국방부, 방위사업청, 병무청
- 2)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각 군, 합동참모본부, 합동부대 및 기관
- 3)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, 「한국국방연구원법」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,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국방

기술품질원,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

4)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의 조정·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라.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불법·비리정보

- 1) 군인 및 군무원
- 2)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장교·부사관 임용예정자
- 3) 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
- 4) 그 밖에 위 다목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(단,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,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)

마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

제4조제1항제5호가목 중 “정보작전”을 “사이버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대테러, 통합방위 지원

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자료 협조·지원 요청 및 정보제공) 사령부(소속부대)는 이 영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와 지원을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(부대)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

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9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정원)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직무)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	제4조(직무) ①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	1. ----- --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·군무원, 시설,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	라. ----- ----- <u>문서, 정보통신, 사이버, 암호, 전자과, 위성 등에 대한 보안업무</u>
2.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	2. ----- --
가. 「방첩업무 규정」 중 군 관련 방첩업무	라. 그 밖에 「방첩업무 규정」 ---
<신 설>	나. <u>북한·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</u>
나. 군 및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·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	가. <u>군(해외에 체류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.) 및</u> ----- ----- -----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·작성 및 처리	3. ----- -----

업무

가. (생략)

나. 대(對)국가전복,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

다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,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·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- 통합방위-----

다.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

- 1) 「정부조직법」 제33조에 따른 국방부, 방위사업청, 병무청
- 2)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각 군, 합동참모본부, 합동부대 및 기관
- 3)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, 「한국국방연구원법」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,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,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
- 4)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의 조정·감독을 받는 기관

라. 군인 및 군무원,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장교·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·비리정보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4. (생략)

및 단체

라.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불법·비리정보

- 1) 군인 및 군무원
- 2)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장교·부사관 임용예정자
- 3) 「군무원인사법」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
- 4) 그 밖에 위 다목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(단,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,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은 제외한다)

마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

4. (현행과 같음)

5.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
가.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

나. ~ 라.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6조 ~ 제8조 (생략)

제9조(정원) 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②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비율을 산정할 때 병(兵)의 정원은 제외한다.

5. -----
가. 사이버 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대테러, 통합방위 지원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자료 협조·지원 요청 및 정보제공) 사령부(소속부대)는 이 영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와 지원을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(부대)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 ~ 제9조 (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)

제10조(정원)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·제11조 (생략)

제11조·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76